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07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이소영 · 김원이 · 정일영
김남근 · 박민규 · 김남희
정태호 · 황 희 · 채현일
임미애 · 김성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차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하여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공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적 통제수단을 통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재체계의 정합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24조 삭제 및 제26조 등).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본문 중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2조 또는 제23조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4조 및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제25조(양벌규정) ----- ----- ----- ----- 제22조 또는 제23조의 ----- ----- ----- ----- ----- -----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신 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